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 
관한 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2023년 6월 9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도병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도병두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자치역량 도모를 위한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·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보건지소 등의 운영 원칙 및 업무 (안 제3조 ~ 제5조)
- 주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(안 제6조 ~ 안 제8조 )
- 위원의 해촉 (안 제9조)

- 수당 및 표창(안 제10조 및 안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 보건지소, 보건분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구민에게 자문 받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
- 주민주도 건강증진 사업의 확장 및 높아진 주민참여 요구에 따른 건강증진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지소 등을 추가하고 주민 자조모임 적극 발굴 및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체계 강화,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교육,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건강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본 조례 제정안은 적합하고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